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허가대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4. 지원내용 중 '지원품목' 정보 참조)

< 지원 자격 >

-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24년 ~ '25년에 고용부 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 보건분야) 기술 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공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지원함
- '26년에 고용부 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 보건분야)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신속지원으로 연계하여 즉시 지원함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참여제한 사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그 외 공단 추진 재정 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예산) 128.25억원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 과거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방식) 공모방식(일정기관 일괄 접수)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 지원 제도 운영
 - 공모접수·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

| 구분 | 일반지원 | 신속지원 |
|------|----------------------------|--|
| 지원대상 | 환기장치 설치 희망 사업주 | 고용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 |
| 신청기간 | 공모접수 : '26. 1. 2. ~ 1. 30. | 2026년* |

* 연내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시

○ (지원품목)

| 지원 품목 | 품목 조건 |
|---|--|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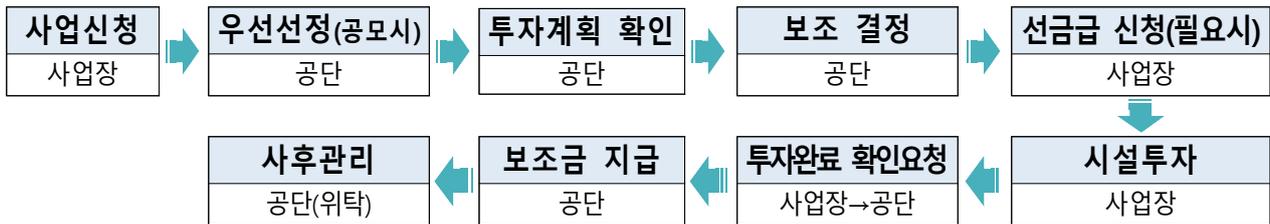
○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공사전) 제출하여야 함
- 동일 지원품목에 타기관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
- 인허가·신고 위반으로 공단에서 비용지원 한 지원설비를 철거 하는 등 시설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됨(덧붙임3 참조)

5. 세부 사업절차 및 조건



① 사업신청(사업장)

- (접수·선정) 공모방식(일정기간 일괄 접수)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6. 1. 2.(금) ~ 1. 30.(금) 18:00
-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우편 접수일자) 인정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문의 1644-8845, 덧붙임2 참조)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비고 |
|---|---------------|
|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덧붙임 4-1 양식 참조 |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③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 |
| ④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 |
| ⑤ 사업자 등록증 | |
| ⑥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근거, 도면(계통도 등) 등 - 환기장치 설계근거 및 도면 : 설계근거(유해인자 종류, 환기장치 구조, 설계근거 등), 도면(계통도, 배치도 등)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세부내역서,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 사본 등 | |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⑧ 중소기업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해당시 제출 |
| ⑨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덧붙임1 참조) | 해당시 제출 |
| ⑩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할 경우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확인 등 | 덧붙임 4-1 양식 참조 |
| ⑪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

※ 신청양식 공단 홈페이지 게시 (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신청 →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 비용) → 공지사항)

- ② (선정) 공모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덧붙임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공단)
 -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
 - 급·배기환기장치,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품목 재원 분리 운영 및 선정
- ③ (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공단)
 -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 ④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⑤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주)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 (덧붙임 4-2 참조)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신청(사업장 요청 시)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
 - 선금급 신청양식(덧붙임 4-3 참조)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 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 공급업체에 위임 지급하지 않음
 - 공사업체,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⑥ (투자완료 확인)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 ③ 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 ④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⑥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 ⑦ 지급보증보험 증권
- ⑧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자필서명)
- ⑨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제출시기: 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시공 전)
- ⑩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⑪ 보조금 지급 위임장(해당시)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보고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자부담)

⑨의 서류는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작성(추후 공지 예정)

<지급보증보험 증권>

-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 5. 13. (지급보증기간: 4년)
보험기간: '26. 5. 1. ~ '30. 4. 30.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공단은 투자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시설의 적정여부 및 실거래 입증서류 적정여부 확인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설비 설치 장소,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사업장 요청시)**
 -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덧붙임4-3 참조)
 -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
-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 년도로 이월 지급될 수 있음

⑧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공단 위탁기관)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공단 위탁기관이 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며,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6.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 추가 환수 | 참여 제한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5배 | 5년 |
|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 3년 |
|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배 | 3년 |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2배 | 3년 |
|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2배 | 3년 |
|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3년 |

7. 기타사항

-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9호),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 규칙 제1128호)을 따름

| 항목 | | | | 점수 | | | | | | | |
|---|---------------------|--|-----------|---|-----------|------------|-----------|-----------|-----------|-----------|-----|
| ■ 기본 항목 | | | | 100점 | | | | | | | |
| ①~④ 배점 부여가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 (최대 70점) | | | | | | | | | | | |
| 항목 | 내용 | | 배점 | 비고 | | | | | | | |
| ① 고위험 작업 보유 사업장 | 음식·식품 조리 |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필요 사업장 | 70 | 신청서 활용 | | | | | | | |
| | 세척·살균·멸균·도금작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세척, 살균, 멸균, 도금작업 중 하나의 용도로 사용 시 - '25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기준 | 30 | 공단 전산 활용 ※ 측정보고서에서 작업 확인 불가시 별도 증빙 제출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 | '2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 화학적인자에 한정함 | 20 | 공단 전산 활용 | | | | | | | |
| ② 작업환경개선 필요사업장 | 고용부 감독 등 | 고용부의 환기장치 설치 등 개선 명령시 - 시정지시서 또는 명령서 ('24~현재) | 50 |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 | | | | | |
| | 공단 기술지원 (민간위탁 보건분야) | 공단 기술지원 결과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24~현재) - 화학물질 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산업보건 고위험 종합관리,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보고서 민간위탁 보건분야 기술지도를 실시한 경우 ('24~현재) | 50 | 공단 전산 활용 | | | | | | | |
| ③ 직업병 위험 사업장 | 직업병 산재승인 | 최근 3년간('24~현재) 직업병 산재 승인 ※ 금속·중금속·유기화합물·기타화학물질중독·직업성암에 한정하며 그 외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병은 제외 | 10 | 공단 전산 활용 | | | | | | | |
| | 특수건강진단 | '2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1), 요관찰자(C1) 발생(최대10점) - D1 5점(1명당), C1 1점(1명당) ※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제외 | 10 | | | | | | | | |
| ④ 급성중독 고위험 업종 | 우측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업종 | 코드 |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공단 전산 활용 ※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 | | | | | | | |
| |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25*** | | | | | | | | |
|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 | | | | | | |
| | |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 | | | | | | | | |
| | | 1차금속제품제조업 | 24*** | | | | | | | | |
|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29*** | | | | | | | | |
| | |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 | 30*** | | | | | | | | |
| | | 가구제조업 | 32*** | | | | |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 | | | | | | | |
| 반도체제조업 | 261** | | | | | | | | | | |
| 전자부품제조업 | 262** | | | | | | | | | | |
| ⑤ 사업장의 영세성 : 상시근로자에 따른 점수 부여 (공단 전산 활용) | | | | | | | | | | | |
| 기준 | 5인 미만 | 5~10인 미만 | 10~15인 미만 | 15~20인 미만 | 20~25인 미만 | 25~30인 미만 | 30~35인 미만 | 35~40인 미만 | 40~45인 미만 | 45~50인 미만 | 30점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
| ■ 가점항목 | | | | ※ 가점항목과 기본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까지만 부여 가능 | | 30점 | | | | | |
| ⑦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 최근 10년('16~'25) 공단 용자금 지급·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공단 전산 활용) | | | | | | 10점 | | | | | |
| ⑧ 공단 사업 참여 사업장* : 참여사업 당 5점 부여(최대 10점, 공단 전산 활용) | | | | | | 10점 | | | | | |
| * ① 위험성평가 인정(인정기간 내) ② KOSHA-MS(인증기간 내)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24~현재) ④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24~현재) | | | | | | | | | | | |
| 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각 5점씩 부여 (최대 10점)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 | | | | 10점 | | | | | |
| * ① 노사문화우수기업 ② 강소기업 ③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 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⑥ 일자리 으뜸기업 ⑦ 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 산학협력 우수기업 ⑨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⑩ 여름휴가부산 우수기업 | | | | | | | | | | | |

※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순번 별 점수가 높은 사업장(①→②→③→④→⑤) 우선 선정.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

※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

○ (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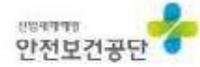
○ 접수처

| 연번 | 일선기관 | 연락처 | 주소 | 관할지역 |
|----|-------------|--------------|--|---|
| 1 | 서울광역시 본부 | 02-6711-2831 | (04512)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층 |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 2 | 서울동부 지사 | 02-2086-8025 | (0583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
| 3 | 서울남부 지사 | 02-6924-8734 | (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 4 | 강원지역 본부 | 033-815-1043 | (24436)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
| 5 | 강원동부 지사 | 033-820-2512 | (2551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 6 | 부산광역시 본부 | 051-520-0616 |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7층 | 부산광역시 |
| 7 | 울산지역 본부 | 052-226-0553 | (44713)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 울산광역시 |
| 8 | 경남지역 본부 | 055-269-0526 |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
| 9 | 경남동부 지사 | 055-371-7562 | (50635)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10 | 광주광역시 본부 | 062-949-8754 | (6236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빌딩 8,9,11층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 11 | 전북지역 본부 | 063-240-8561 | (5501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 12 | 전북서부 지사 | 063-460-3643 | (54150)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 13 | 전남지역 본부 | 061-288-8737 |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빌딩 7층 |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 14 | 전남동부 지사 | 061-689-4931 |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 중앙로 35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 15 | 제주지역 본부 | 064-797-7522 |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번 | 일선기관 | 연락처 | 주소 | 관할지역 |
|----|--------------|--------------|--|--|
| 16 | 인천광역시 본부 | 032-510-0566 | (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 인천광역시 |
| 17 | 경기중부 지사 | 032-680-6545 | (145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
| 18 | 경기북부 지사 | 031-828-1965 |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 19 | 고양파주 지사 | 031-540-3822 | (10390)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
| 20 | 경기광역 본부 | 031-259-7158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 14층 |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
| 21 | 경기서부 지사 | 031-481-7520 | (1546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천혜제일빌딩 2층 |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
| 22 | 경기동부 지사 | 031-785-3324 | (1355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췌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 23 | 경기남부 지사 | 031-690-1944 | (17748)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 2~3층 |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 24 | 대구광역 본부 | 053-609-0546 | (41936)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빌딩 20, 21층 |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 25 | 대구서부 지사 | 053-650-6857 | (42661)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경상북도(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 26 | 경북지역 본부 | 054-478-8033 | (39390)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 27 | 경북동부 지사 | 054-271-2022 |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 28 | 대전세종 광역본부 | 042-620-5634 | (34122)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
| 29 | 충북지역 본부 | 043-230-7142 | (2839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KT 3층 |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
| 30 | 충북북부 지사 | 043-849-1033 | (27478)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 31 | 충남지역 본부 | 041-570-3425 | (31169)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유의 사항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필요한
법적사항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법적사항(인허가·신고)이 있습니다. 
- ✓ 공단의 「건강ilter 조성지원 사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신고 등의 법적 요건은 반드시 사업주가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허가·신고 부적정 사례

| 주요 부적정 사례 | 제재사항 | 관련 법령 |
|---|--|---------------------------------------|
| 총량규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로 인하여 배기구(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 시설 설치 | 시설폐쇄명령 | 환경정책 기본법 등 |
|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시설폐쇄명령 | 대기환경 보전법 제26조 |
|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나 미등록 업체가 시공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사업자) |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

▶ 위의 사항 외에도 지역, 사업장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신고가 있음



인허가·신고 위반으로 공단에서 비용지원 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 됩니다.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강일터 조성

[단위: 대(식), 천원]

| 투자설비명 | 모델/규격 (차대번호) | 수량 | 소요 금액 | 자금지원 신청금액 | | | 자체 부담금 | 투자완료 예정일 |
|-------|-----------------|----|----------|-----------|-----|-----|-----------|-------------|
| | 견적업체 | 단가 | | 계 | 보조금 | 용자금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건강일터 조성"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서 류 명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
|--|-----------------------------|
| | 오프라인(직접) |
| ① 견적서(원본) | ○ |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강일터 조성지원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 |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명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 |
| 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 |
| ⑤ 대출예정확인서 | × |
| 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 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 |
| 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 |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주의사항】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건강일터 조성지원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 투자계획확인 및 결정대상자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결정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예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3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이 환수될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외 타 부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조금을 이중 수급은 금하며,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

| | | |
|--------------|------|------|
| 확인자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성 명 | (서명) |

(양식7)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결정받기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결정받은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의 보조·융자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서약자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주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양식9)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제16조 제1항 관련)

□ 건강일터 조성지원

| | | | |
|------------------|---------------|---------|--|
| 재정지원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명 | | 사업개시번호 | |
|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 총 투자금액 | 사업주 부담금액 | 결정금액 | | | 확인(지급)요청금액 | | |
|-----------|-------------|------|----|----|------------|----|----|
| | | 계 | 융자 | 보조 | 계 | 융자 | 보조 |
| | | | | | | | |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 | | | |
|---|-----|-----------|-------------|
| 1 | 금액: | 천원,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2 | 금액: | 천원,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3 | 금액: | 천원,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4 | 금액: | 천원,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3.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6.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해당 시)
 7.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6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지급받는자(2)

(단위: 천원)

| | | | | | |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사업장명 | | 공급설비명 (수량) |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지급금액 | 천원 |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 지급받는자(3)

(단위: 천원)

| | | | | | |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사업장명 | | 공급설비명 (수량) |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지급금액 | 천원 |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 지급받는자(4)

(단위: 천원)

| | | | | | |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사업장명 | | 공급설비명 (수량) |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지급금액 | 천원 |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 지급받는자(5)

(단위: 천원)

| | | | | | |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사업장명 | | 공급설비명 (수량) |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지급금액 | 천원 |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 | | | | |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제17조2 관련) | | |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사업주)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남,여)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개시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 | | | |
| 참여 형태 | <input type="checkbox"/> 건강ilter 조성지원 | | | |
| | | | | |
| | | | | |
| 사업기간 | 착수일자 | ※ 20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완료일자 | ※ 20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
|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 | | 지 급 결정액 | 선금 신청액 |
| <input type="checkbox"/> 건강ilter 조성 지원사업(등 00개 품목) | | | 천원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ilter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 | | | 수 수 료 없 음 |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 | | | |
| 20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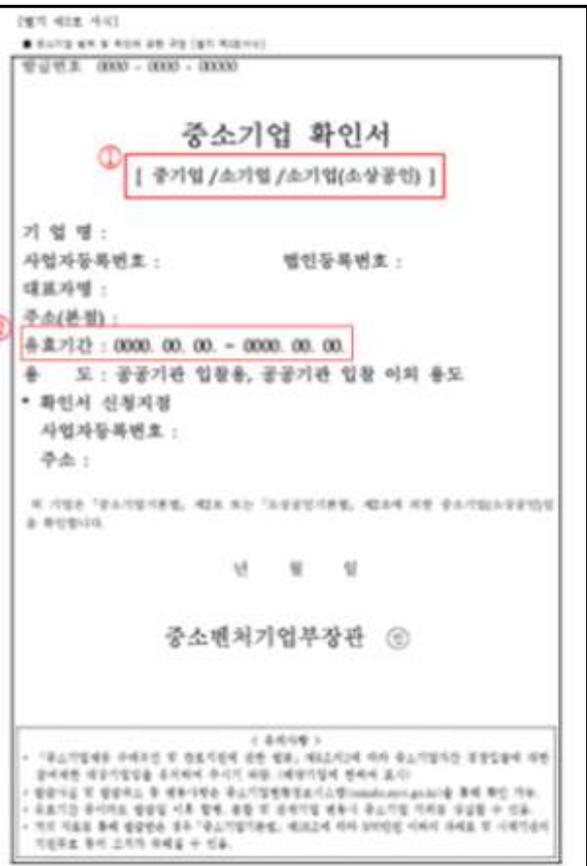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

-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5개월
 -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 | | | | |
|----------------|---|--------------------------------|--|--|
| 증권번호 제 | | 호 | | |
| 기본사항 | | | | |
| 보험계약자 | | 피보험자 |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 |
| 보험가입금액 | | 보험료 |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 |
| 보험기간 |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 | | |
| 보증하는 사항 | | | | |
|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 | | |
| 특별약관 |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특기사항 | | | | |
| 주계약내용 |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 | |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 | | |
|------------------------------|---|------|---|
| 증권번호 | [Blank] | | 호 |
| 기본사항 | | | |
| 보험계약자 | [Blank] | 피보험자 | [Blank] |
| 보험가입금액 | [Blank] | 보험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
| 보험기간 | 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 | | |
| 보증하는 사항 | | | |
| 보증내용 | 하자보증금 | | |
| 특별약관 |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증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특기사항 | [Blank] | | |
| 주계약내용 |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Blank] 담보기간 [Blank] 계약체결일자 [Blank] 계약금액 [Blank] 보증금율 30% | | |
| | *최저한 사업안전보장비율 공공공역 역량강화 사업 필수 - 대형 공공사업 및 장비 동 제작·운송·현장 설치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 | |

첨부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①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②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지급받은금액 × 2배)

| 구분 | 주요 사례 |
|---------------------|--|
| (허위·거짓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②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③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④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페이백 등) |
|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
|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미사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
| (폐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
| (투자완료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